#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은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 에 위치한 주식회사 아토(이하 "아토"라고 함)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우인 2 차 403 호에 위치한 지엔엘(이하 "지엔엘"라고 함) 사이에 2008년 11월 4일 체결한다.

### 전문

- 1. 아토와 지엔엘은 장비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고 함)에 대한 협상과정에 있다.
- 2.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자신만의 영업비밀, 노하우, 그리고 기타 비밀정보 등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 3. 각 당사자는 모든 영업비밀, 노하우, 그리고 기타 비밀정보가 엄격한 비밀보장 방식에 따라 취급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 제 1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1)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가 영업비밀, 노하우, 그리고 기타 비밀정보 등을 개발하여 왔고, 배타적인 권리자임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고객, 공급업자, 사업 배치, 기술과 사업 데이터, 노하우, 공정, 디자인, 아이디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총괄하여 "비밀정보"라고 함).

(2) 비밀정보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세세한 정보, 아토와 00 사 간 프로젝트의 협상과정에 있다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제 2 조 비밀유지의무

- (1) 공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나 본 계약에서 특별히 예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수령하는 자(이하 "수령자"라고 함)는 공개 당사자 또는 그 공개 당사자의 관계회사 또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자신에게 공개된 어떠한 비밀정보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관계회사, 그들 각각의 경영진들, 관리인들, 직원들, 대리인들, 기타 대표자들(총괄적으로, "대표자"라고 함)도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 (2) 본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관계회사는 지배하는 회사, 지배당하는 회사, 또는 당사자의 공동지배 하에 있는 회사를 포함하며, 당사자들에는 관계회사의 대표자들이 포함된다.

#### 제 3 조 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 (1) 수령자, 관계회사들, 그리고 대표자들은 제공된 비밀정보를 프로젝트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2)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필요로 하고,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고지 받았으며, 프로젝트의 목적을 위해서만 비밀정보를 사용할 관계회사 및 그들 각각의 대표자들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3) 수령자는 그의 관계회사들 및 대표자들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제 4 조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예외

수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 (1) 수령자 또는 그의 관계회사 또는 대표자들의 본 계약 위반의 결과 이외의 사유로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 (2) 공개 당시 이미 수령자, 관계회사 또는 대표자들에게 공개되어 있던 정보
- (3) 공개 이후에 수령자, 관계회사 또는 대표자들이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 3 자로부터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수령한 정보
- (4) 수령자 또는 관계회사들이 스스로 개발한 정보

### 제 5 조 자격부여

본 계약의 체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된 비밀정보를 프로젝트를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나 자격을 수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모든 비밀정보는 공개 당사자의 소유이다.

## 제 6 조 정보의 반환

- (1) 수령자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상의 중단, 또는 공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개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포함하거나 언급하고 있는 서류나 유형물(이는 그러한 자료들의 복사물이나 재생산물 포함)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 (2) 수령자, 관계회사, 또는 대표자들은 비밀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폐기하여야 하고, 폐기절차를 감독할 권한이 부여된 수령자의 대표자는 폐기절차에 대하여 공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 7 조 시험 자재와 샘플

- (1) 공개 당사자가 제공한 모든 시험도구와 샘플은 공개 당사자의 소유이며, 수령자는 공개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재와 샘플을 이용하여 시험과 실험을 할 수 있다.
- (2) 수령자는 공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시험 자재와 샘플을 제 3 자가 시험하거나 분석하게 할 수 없다. 모든 시험과 행위의 결과는 공개 당사자의

소유이고,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비밀정보가 된다.

### 제 8 조 법에 의한 공개

- (1) 수령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수사기관의 요구 등), 수령자는 공개 당사자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그러한 요구 상황 등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2) 만약 공개 당사자가 수령자의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호조치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개 당사자가 본 계약 조항의 준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는 법률자문이 법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합리적인 범위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 9 조 당사자들의 관계

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작이나 조합관계, 위임 관계 등이 설정된 것도 아니고, 본 계약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 사이에 프로젝트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실행되고 이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당사자도 본 계약, 또는 그들 각각의 관계회사 또는 대표자들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표시에 의해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어떠한 종류의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다.

## 제 10 조 기타 구제수단

각 당사자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및 관련 법규정 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보유한다.

#### 제 11조 양도금지

수령자는 본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 제 12 조 독립성

본 계약 하에서 어떠한 조항의 포기나 계약위반, 채무불이행은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 13 조 구속력

본 계약은 계약서 상의 당사자 및 그들 각각의 승계인 및 승인된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 제 14 조 완전합의

본 계약은 본 계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한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수정, 보충, 폐지되지 않는다.

## 제 15조 계약의 종료

각 당사자는, 계약 종료 이전에 공개된 본 계약 상의 비밀정보와 관련한 수령자의 의무는 계약 종료 이후 3 년간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언제든지 다른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프로젝트 및 본 계약에 대한 논의를 종료시킬 수 있다.

# 제 16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무

-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도 계약해지 이전에 공개된 본 계약 상의 비밀정보와 관련한 수령자의 의무는 계약해지의 효과 발생 이후 3년간 유지된다.
- (3)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17조 효력발생

본 계약서는 2부가 작성되며, 서두에 기재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 제 18 조 준거법

본 계약의 효력과 이행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 제 19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한다.

이에 그 증거로, 당사자들은 위에 기재된 효력일자에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한다.

주식회사 아토

성명: 박 정민.

직위: [내리

지엔엘

성명: 기 전 존